

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2개월
------	-----	------	-----

납세자	성명(법인명)	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
	상호(법인인 경우 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
	주소(영업소)	
	전화번호 (휴대전화:)	전자우편주소
	지급계좌	은행명 계좌번호

결정 또는 경정청구 내용	법정신고일		최초신고일			
	경정청구 대상(과세물건)					
	구분		과세표준	산출세액	비과세/ 감면액	납부세액
	()세	당초신고				
		결정 또는 경정신고				
		증 감 액				
	()세	당초신고				
		결정 또는 경정신고				
		증 감 액				
	결정 또는 경정청구 이유(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)		사유발생일			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합니다.

청구인
(서명 또는 인)

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

위임장

위 납세자는 아래 "위임받은 자"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위임합니다.

위임자(납세자)
위임받은 자(청구인)

(서명 또는 인)
(서명 또는 인)

위임 받은 자	성명	주민등록번호	위임자와의 관계
	주소	전화번호	

접수증(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)			
성명		주소	
구비서류	결정 또는 경정청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		접수인
			접수일자

유의사항

- 지급계좌의 예금주와 납세자는 동일해야 합니다.
-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지방세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